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트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(주식)

□ 변경 사유 :

- ① 이익분배 방법 변경 (전액분배 →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)
- ②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18. 7. 5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-	<u>2018. 5. 1. 기준</u>
보수(연, %)	-	<u>2018. 5. 1. 기준</u>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2017. 11. 30. 기준	<u>2018. 5. 31. 기준</u>
4. 운용전문인력	-	<u>2018. 5. 1. 기준</u>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-	<u>2018. 5. 1. 기준</u>
5. 투자실적 추이	-	<u>2018. 5. 1. 기준</u>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-	<u>2018. 5. 1. 기준</u>
[2].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 관리	표준편차 : 12.24%	<u>표준편차 : 12.90%</u>
2. 투자위험 등급 분류	-	<u>2018. 5. 1.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4. 집합투자업자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(여의도동, 10 층)	<u>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 (성수동 1 가)</u>
5. 운용전문인력	2017. 11. 30. 기준	<u>2018. 5. 31. 기준</u>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-	<u>2018. 5. 31.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-	<u>2018. 5. 31. 기준</u>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표준편차 : 12.24%	<u>표준편차 : 12.90%</u>

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

사항
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

보수 및 비용

2018. 5. 1. 기준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

한 사항

가. 이익 배분

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

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

※2018 년 월 일 이후 매년 결산 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

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중
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
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
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
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-	<u>2018. 5. 1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-	<u>2018. 5. 1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<u>2018. 5. 1.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(여 의도동, 10 층)	<u>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 (성 수동 1 가)</u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